

□ 공무원 채용 군복무 가산제 폐지 청원 배경과 전망

“사실상 합격 좌우” 공정경쟁 원천봉쇄

보훈처 “보상 당연 개정 불가” 행쇄위 내주 심의 결과 주목

김미경 기자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아닌가?”

이화여대 조택(법정대 행정학과) 교수 등 75명의 교수와 김승현(법정대 행정학과 3)씨 등 이화여대생 1천9백31명이 지난 6월 말 청와대와 행정쇄신위원회·총무처·정무제2장관실 등에 동시에 접수시킨 ‘7급·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서는 군복무혜택 법조항으로 차별받아온 여성들에 의한 사상 최대 규모의 청원서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 준비작업을 맡은 조택 교수는 “5년여 동안 제자들의 공무원시험 지도를 해오는 과정에서

군복무 가산조항 때문에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1~2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총점의 5~3%까지 가산해주는 것은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에게 크게 불리한 성차별적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건의는 지난해 4월 발족된 총리실 내 행정쇄신위원회에 현재까지 6건이나 접수됐으며 국가보훈처·정무제2장관실 등에도 벌써 10여건씩 접수돼 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선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심각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여주는 이번 사안은 ‘국가방위 의무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주어야 하나’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

이 취업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않는가’ 등의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의견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월 행정쇄신위원회에 ‘군복무자 가산조항 폐지’를 건의한 김호태(경북 안동시 태화동)씨의 제안은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씨는 “국가방위에 대한 보상으로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경쟁의 기회균등이라는 또다른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대군인은 채용시험 때 가산점 특혜와 함께 채용 후 호봉상정에서 군경력 인정 등으로 이중혜택을 받게 돼 여성뿐 아니라 여러 이유로 군대를 못한 사람들은 이중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에 대해 담당부서인 국가보훈처의 입장은 강경하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김의환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모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남녀차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 아래서는 군복무로 취업을 위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제대군인들에게 당연히 가산점 등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용대상이 해마다 1천명

정도여서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채용시험 때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61년 ‘군사원호대상자 임용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실시됐으며 8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복무자 가산제도 폐지 건의를 접수한 정무제2장관실은 지난 2일 행정쇄신위원회에 여성차별 해소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행정쇄신위원회쪽도 “국가보

공무원을 지원하는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무원 채용시험 때 제대군인들에게 주는 가산점이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광주시 9급 공무원 채용시험 때 원서를 접수시키고 있는 대졸 여성들.

훈처·정무제2장관실·총무처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중 정식 심의과제로 상정해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심의결과가 주목된다.